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-6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1년 2월 23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1. 2. 23. ~ 2021. 3. 9.(15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성*현	1974. 04. 10.	0178200274100005893	₩7,560,000	울산광역시 중구 고북수 1길
2	최*주	1956. 11. 28.	0178200274100005892	₩18,000,000	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3길
3	김*섭	1973. 03. 02.	0178200274100005890	₩18,000,000	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산꽃로
4	백*훈	1987. 05. 31.	0178200274100004078	₩30,564,000	충청남도 논산시 번영로
5	정*성	1971. 08. 06.	0178200274100005891	₩18,000,000	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
6	이*생	1972. 01. 30.	0178200274100005906	₩31,860,000	대전광역시 동구 흥릉로
7	강*호	1967. 01. 03.	0178200274100004074	₩29,484,000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
8	고*극	1962. 01. 01.	0178200274100005897	₩31,428,000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 14길
9	이*화	1957. 04. 03.	0178200274100005900	₩26,028,000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상현읍 울금 1길
10	윤*태	1987. 03. 07.	0178200274100005905	₩27,972,000	대전광역시 서구 용소로 49번길
11	김*순	1954. 09. 13.	0178200274100002859	₩18,000,000	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2	허*욱	1962. 05. 20.	0178200274100005898	₩29,916,000	대전광역시 동구 진수길
13	김*익	1967. 03. 28.	0178200274100004075	₩19,580,400	경기도 군포시 군포로
14	오*훈	1971. 10. 28.	0178200274100002875	₩23,004,000	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말 2길
15	곽*수	1968. 07. 09.	0178200274100002865	₩18,000,000	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갈숲길
16	이*구	1966. 06. 10.	0178200274100004079	₩31,428,000	경기도 오산시 궤동로
17	김*현	1975. 05. 24.	0178200274100004077	₩28,836,000	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신갈길
18	김*석	1974. 01. 04.	0178200274100002862	₩18,000,000	경상북도 문경시 매봉 4길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

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, ☎ 042-347-2106, 2105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